

(주)HS효성그룹

ESG경영 정책집

목차

환경경영 정책	-----	3
Global SHE 지침	-----	4
생물다양성 정책	-----	10
생물다양성 지침	-----	11
산림파괴 방지 정책	-----	15
인권경영 원칙과 정책	-----	18
안전보건 정책	-----	25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정책	-----	26
협력업체 행동지침	-----	31
분쟁, 책임광물 정책	-----	34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	37
HS효성 윤리강령	-----	40
HS효성 윤리강령 실천지침	-----	42
부패방지 정책	-----	46
사회공헌 활동 정책	-----	51
전략물자 수출제한 정책	-----	53
조세 정책	-----	55

환경경영 정책

(주)HS효성은 환경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다양한 환경경영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전 사업장은 환경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주)HS효성 환경경영 전략체계를 근간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환경경영 기반을 조성한다.
2. 환경과 당사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경영 시스템을 구축, 이행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를 달성하고 친환경 공정설계 및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유통, 사용,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 최소화를 추진한다.
3. 유해물질, 폐기물, 폐수, 온실가스 등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저감활동을 통해 수자원, 대기,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한다.
4. 제반 법규, 규정 및 협약 준수에서 나아가 수자원, 광물을 포함한 모든 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 절감을 추진하여 자원 및 에너지 고갈을 방지하고, 사용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5.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 고객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총체적인 신뢰성을 높인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Global SHE 지침

01. SAFETY

01) 목적

(주)HS효성(이하 ‘회사’)은 공급망, 사업장, 유통망, 판매채널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지속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SHE 지침을 선언한다. SHE 지침은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필요 시, 안전보건경영 추진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제 개정한다.

02) 적용 범위

회사 국내외 전 사업장은 SHE 지침 적용 받는다. 또한 회사는 공급자, 협력사, 유통망 등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SHE 지침 준수를 권장하며 안전 예방 점검 확대, 안전문화 내재화, 안전 신기술 도입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회사는 사업 국가별 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지침에 따라 안전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

03) 기본 원칙

(1) 글로벌 안전 경영

사업 국가별 관련 법규, 협약 및 내부 방침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전 사업활동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2) 안전한 사업장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인명, 재산 손실이 없도록 안전위험요인을 점검, 개선해 무사고 구현에 힘쓴다.

(3) 교육훈련 및 활성화

SHE 지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4) 안전 경영 문화 개선

안전 보건을 최우선 경영 방침 실천사항으로, 전사 통합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성과 평가 지표를 운영한다.

(5) 중대재해 집중 예방

회사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 Zero를 위해 전략적 예방 점검 활동을 확대한다. 고위험 운영 설비 및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평가 절 차와 기준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실천 가이드 제정 및 배포, 안전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6) 안전의식 향상

회사는 임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일상에서 안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 구축, 체험 형 교육 콘텐츠 제공, 참여 형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며,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최초 조치, 긴급 대피, 화재진압 등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안전 분야에 리더십을 발휘한 이해관계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

04) 거버넌스

(1) 책임 및 역할

회사는 전사 안전보건 관리자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사업장별 환경안전팀장과 안전보건 관리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통해 안전보건 전략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활동 지원, 비상대응 Process 구축 및 점검,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사회는 안전보건 관련 중요 이슈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영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 시, 안전보건의 주요 이슈를 고려한다. 또한, 이사회는 안전보건의 위험 영향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극대화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ESG경영 위원회 및 경영회의가 상정한 안전보건의 분야별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05) 관리 체계

(1) 안전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회사는 SHE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국내외 전 사업장은 안전 실행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증진 활동 추진, 안전 활동 이행 실적 분석 기반의 개선 조치 마련 등 안전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한다.

(2) 안전 인식 제고

회사는 임직원,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재해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안전, 재해에 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3) 고충처리 채널

사업장 환경안전팀장 및 안전보건 관리자로 구성된 안전보건 실무 협의체를 통해 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안건 및 의결 사항은 전 임직원에게 공유한다. 또한, 고충처리채널을 통해 임직원 및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한다.

(4) 성과 관리

회사는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 회사 안전보건 이슈 등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KPI에 반영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독려한다.

02. HEALTH

01) 목적

회사는 공급망, 사업장, 유통망, 판매채널 등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일반 질환 및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선언한다. 발생 가능한 보건 리스크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지속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본 SHE 지침을 선언한다.

02) 적용 범위

회사 국내외 전 사업장은 SHE 지침을 적용 받는다. 또한 회사는 공급자, 협력사, 유통망 등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SHE 지침을 권장하며 보건 리스크 예방 점검 확대, 건강한 근로 문화 내재화, 보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회사는 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지침에 따라 보건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

03) 기본 원칙

(1) 글로벌 보건 경영

관련 법규, 협약 및 내부 방침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전 사업활동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2) 건강한 일터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개인의 건강 증진 활동 수행으로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3) 교육훈련 및 활성화

SHE 지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4) 제품 사용 단계의 안전과 보건 책임 경영

고객의 제품 사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주기 전 과정에서 유해 인자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04) 거버넌스

(1) 책임 및 역할

회사는 전사 안전보건 관리자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사업장별 환경안전팀장과 안전보건 관리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통해 안전보건 전략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활동 지원, 비상대응 Process 구축 및 점검,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사회는 안전보건 관련 중요 이슈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영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 시, 안전보건의 주요 이슈를 고려한다. 또한, 이사회는 안전보건의 위험 영향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극대화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ESG경영 위원회 및 경영회의가 상정한 안전보건의 분야별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05) 관리 체계

(1) 보건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회사는 SHE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국내외 전 사업장은 보건 실행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및 보건 증진 활동 추진, 보건 활동 이행 실적 분석 기반의 개선 조치 마련 등 보건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한다.

(2) 인식 제고

회사는 임직원,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보건에 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보건 교육을 통해 임직원,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가 업무수행 시 건강한 신체 및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한다.

03. ENVIRONMENT

01) 목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 및 회사 발전과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여,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수자원, 오염물질,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원재료와 부재료, 폐기물, 제품의 환경영향, 생물다양성 총 8개 분야별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는 바이다. 환경 전반에 걸친 추진체계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지침에 모두 적용된다.

02) 적용 범위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그 소속의 모든 회사, 사업 단위, 공급망, 유통망 등에 적용된다.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고객 등 공급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용 이해관계자가 환경경영을 위해 SHE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03) 기본 원칙

(1)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회사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해 에너지와 온실가스 관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 전반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2) 수자원

회사는 지속가능한 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용수 저감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물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저장량 확대를 위한 저수시설 운영을 적극 고려한다. 또한 공업용수 외 상수 지역의 물 고갈 리스크를 파악 및 개선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추진한다.

(3) 오염물질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저감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 및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 등에 기반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4)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해물질 사용의 저감 및 위해성 관리 등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관리 지침을 수립 및 이행한다.

(5) 원재료와 부재료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천연 자원 및 한정적인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수립한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훼손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생산된 원부자재가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6) 폐기물

회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7) 제품의 환경영향

회사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는 등 재활용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제품의 개발, 생산, 폐기, 회수 등 전 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8) 생물다양성

회사는 사업운영 시 가치사슬 내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예방 및 완화하고 증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하기 위해 제정한다.

04) 실행 방안

(1) 인식 제고

회사는 임직원,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경영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환경경영 필요성에 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환경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가 친환경적 사고 방식을 갖고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2) 소통

- 임직원 : SHE 지침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 환경경영 관련 인식을 개선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수질과 대기 배출 허용 기준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등의 다양한 환경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내재적 환경 리스크를 관리한다.
- 공급망 : 환경경영 추진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급망과 공유하며, 가치사슬 전반의 환경가치 창출을 위해 공급망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한다.
- 고객 :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입각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운영한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객 맞춤형 VOC 관리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새로운 소재의 개발, 친환경 연구개발 방향에 맞춰 저탄소, 순환 경제, 환경 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 지역사회 :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주민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 주주 및 투자자 : 주주 및 투자자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하는 환경경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한다.
- 정부 : 사업 운영 국가별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환경경영 성과를 공개한다.

05) 거버넌스

(1) 책임 및 역할

이사회는 환경경영 관련 중요 이슈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영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시 환경경영의 8개 분야 별 주요 이슈를 고려한다. 또한, 이사회는 환경경영의 8개 분야 별 위험 영향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극대화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ESG경영위원회 및 경영회의가 상정한 환경경영의 8개 분야 별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 주요 설비투자 계획 등 환경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 CEO 외 글로벌 법인장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중요 안건은 ESG경영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 및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한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생물다양성 정책

우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기후변화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중요 지구환경 문제로 인식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전 임직원은 생물다양성 정책을 숙지 및 성실히 준수하여,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1. 생물다양성 주류화

- 회사는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며 임직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 사업 관련 생물다양성 위험 및 기회 요인 관리

- 회사는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한다.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하여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

4.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

-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고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다.

5. 생물다양성 관련 인게이지먼트 강화

-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6. 투명한 생물다양성 정보 공개

-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생물다양성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한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생물다양성 지침

0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주)HS효성(이하 ‘회사’)은 지구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그린경영 및 상생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차원에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확대하고자 사업 운영 전반(Upstream 및 Downstream 포함)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전,복원 및 확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지침을 제정합니다. 본 생물다양성 지침은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BNBP의 기업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02. 정의

회사가 정의하는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생물 종(Species)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입니다.

03. 적용 범위

본 원칙과 방침은 회사를 비롯한 국내외 모든 자회사를 포함한 계열회사에 적용되며, 회사의 협력사 등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성을 확산,전파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본 지침을 기반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관리하되, 생물다양성 관련 현지 법과 모순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04. (주)HS효성 생물다양성 지침 점검

회사의 임직원 및 가치사슬 내,외 이해관계자의 생물다양성 원칙 준수에 대한 정기적으로 점검과 성과 검토를 통해 원칙 준수를 도모하겠습니다.

05. (주)HS효성 생물다양성 지침 상세

01) 생물다양성 주류화

회사가 추구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회사는 지속적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고 임직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1)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회사의 임직원 및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 (2) 회사와 협력사의 임직원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02) 사업 관련 생물다양성 위험 및 기회 요인 관리

- (1) 생물다양성과 토지에 대한 보호와 국제 협약(World Heritage areas, IUCN Category 1-4 protected areas) 및 국가별 생물다양성 관련 컴플라이언스 적 요건을 준수한다.
- (2) 회사 사업 확대, 증설 또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여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요인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
- (3) 전 사업장은 위치한 국가, 지역별 사회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 (4) 회사의 생물다양성 원칙과 방침 준수에 따른 제품 개발, 생산 및 서비스 차별화 등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한다.
- (5) 회사의 협력사에도 사업운영상 발생 가능한 생물다양성의 리스크 및 기회를 분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확대를 위한 활동을 권고한다.

0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하여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

- (1) 회사 전 사업장 인근의 멸종 위기 종, 고유종, 서식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학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 활동을 실시한다.
- (2)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서식지 인근의 사업장은 당사 사업운영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해와 복원 노력이 상쇄되는 최소 순 손실(No Net Loss)을 방지하고, 순 긍정적 영향(Net Positive Impact)를 실현한다.
- (3)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및 관리의 일환으로 사업장 인근 침입 성 외래종의 제거 관리 등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04)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고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다.

- (1) 제품 설계 및 원료 선택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확대한다.
- (2) 제품 제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을 확대하여 신규 자원의 채굴과 사용을 줄인다.
- (3) 고객의 사용 수명을 늘리는 제품으로 자원 순환경제와 자원절약에 기여한다.
- (4) 제품 사용 후 폐기 시 환경적 영향이 적은 제품을 개발한다.

05) 생물다양성 관련 인게이지먼트 강화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06) 투명한 생물다양성 정보 공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생물다양성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한다.

- (1) 회사의 생물다양성 원칙과 방침 준수의 노력과 활동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지표별 평가를 진행한다.
- (2) 평가 결과뿐 아니라 사업 관련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06. 이행 체계

회사는 본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장 및 그 인근지역, 인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합니다. 국내외 생물다양성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UICN Category 1-4 protected areas)에 따라 국내외 사업장 인근 관리 지역을 정의, 사업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종(Species)과 분포현황(Numbers)을 파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와 의존도를 분석하고, 이를 보전, 복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합니다.

07. 관리 체계

01) 거버넌스

회사는 최고이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예방 및 개선하도록 합니다. 주요 역할은 생물다양성 정책 제,개정 논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심의, 그 외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한 논의입니다. 회사의 이사회 또는 산하 ESG경영위원회는 사업운영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생물다양성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응, 관련 투자의사결정, 평가 및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검토,심의합니다. 회사는 생물다양성 정책에 근거하여 이행하는 실무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실무조직은 생물다양성 평가 및 리스크 이행 체계 운영,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를 위한 활동 이행,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확산,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등입니다.

- (1) 회사는 생물다양성 관련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목표는 국내외 법률 및 규제, 가치사슬 내 생물다양성 리스크, 산업 관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 중장기 생물다양성 목표에 따른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성 및 고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목표를 조정한다.

(3) 회사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목표 및 이행현황을 경영진 성과평가지표(KPIs)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02) 교육 및 확산

(1) 회사는 자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2) 생물다양성 활동 및 성과를 홈페이지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한다.

(3)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확대를 위해 산업계나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03) 고충처리

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고충사항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제보자는 제보자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제보센터 : [HS효성 제보센터](#)

(2) 다른 방법의 제보하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 전화번호 : 02-707-6114

- FAX : 02-707-7663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산림파괴 방지 정책

01. 목적

본 문서는 (주)HS호성(이하 ‘회사’)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업으로서 사업운영 전반에 발생가능한 산림파괴를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책은 UN 지구산림목표를 위한 전략계획(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and GFGs) 등 글로벌 표준의 방향과 활동을 존중하며, UN 당사국총회 산림 이니셔티브(UN,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0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법인은 본 산림파괴 예방 정책을 적용 받는다. 또한 회사는 협력사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산림파괴 보호의 필요성을 확산 및 전파한다. 회사는 본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리스크를 관리하되, 산림파괴 금지, 산림지역 보호, 벌채 및 목재제품의 이용 등에 관한 현지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03. 정책

01) 순 산림파괴 제로 이행

회사는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산림파괴 최소화에 앞장서며, 지속적인 환경정책 준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재조림을 통한 보상 약속인 순 산림파괴 제로를 이행한다.

02)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장 내부와 그 주변지역의 녹지면적 유지, 보호활동 등을 통해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 보전, 산림 탄소 저장량 증진에 기여한다.

(1) Future Reforestation

- 회사는 자연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도록 신규 조림 및 재조림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2) End All Deforestation

-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산림파괴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위해 노력한다.

(3) Carbon Offset

- 회사는 산림 조성,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의 산림 탄소 상쇄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잔여 배출량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04. 실행 방안

회사는 해당지역 또는 인근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 협력사 및 원산지를 포함한 공급망이 위치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운영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에 산림 보호-복원-확대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한다.

01) 회사는 협력사에도 사업운영상 발생 가능한 산림파괴 리스크 및 기회를 분석하고 산림 보호,복원, 확대를 위한 활동을 권고한다.

02) 회사는 국내외 법률 및 규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ICUN Category 1-4 Protected Areas)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지역으로 정의한다.

(1) 국제사회보전지역(ICUN Category Ia 등)

-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자연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생물종이 번영하는 지역으로서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 아주 작은 인위적 영향에도 파괴 될 수 있는 지역

(2) 원시 야생이 온전한 지역(ICUN Category Ib 등)

- 원시 야생의 자연생태계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시 야생의 생활 양식을 보유한 원주민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교육,과학 목적으로 최소한의 영향만을 허용하는 지역

(3) 국가 단위 보호지역(ICUN Category 2 등)

- 국가단위에서 자연생태계 형성과정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서 토종 동식물의 보호와 함께, 신앙적, 과학적, 교육적, 휴양,관광 등에 있어 중요성이 높은 지역

(4) 자연 문화 유적지역(ICUN Category 3 등)

-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신앙 및 문화로 인해 형성된 자연생태계로서 고고학,인류학,역사학, 지리학 관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지역

(5) 서식지 관리지역(ICUN Category 4등)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한 지역으로서 목표종의 보호와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05. 정책의 관리

01) 거버넌스

회사는 최고 경영진 및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산림파괴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주요 역할은 산림파괴 리스크 검토, 산림파괴 리스크 대응방안 심의, 그 밖에 산림의 보호-복원-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그 외 사업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산림파괴 분야 법률 및 규제 대응 등을 검토, 심의한다.

회사는 산림파괴 예방 정책을 이행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산림파괴 예방 조직의 주요 역할은 산림파괴 리스크 점검 절차 운영, 산림 보호-복원-확대 활동의 이행, 산림관련 고충 접수와 처리, 산림파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확산, 대외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한다.

- (1) 회사는 산림파괴 방지 관련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목표는 국내외 법률 및 규제, 가치사슬 내 산림파괴 리스크, 산업 관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 중장기 산림파괴 방지 관련 목표에 따른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성 및 고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목표를 조정한다.
- (3) 회사는 산림파괴 방지 등 환경목표 및 이행현황을 경영진 성과평가지표(KPIs)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02) 제보 채널 운영

(1) 고충 접수

회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관련 고충 사항을 임직원 및 기타 단체(개인)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제보자는 제보자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가) 온라인 제보센터 : [HS효성 제보센터](#)

(나) 다른 방법의 제보하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 전화번호 : 02-707-6114
- FAX : 02-707-7663

(2) 고충 처리

회사는 산림파괴 신고 사례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03) 교육 및 정보공시

(1) 교육

회사는 임직원 대상 환경경영 교육을 통해 산림 보호-복원-확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한다. 산림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업무 과정에서 산림보호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산림파괴 관련 이슈 발견 시,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2) 정보공시

회사는 산림 보호-복원-확대 활동 및 성과 정보를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관련 정보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공시한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인권경영 원칙과 정책

01. 목적

01) 본 문서는 (주)HS효성(이하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회사는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 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02. 용어의 정의

01) 인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02) 인권경영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03) 임직원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04)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03. 적용범위

0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0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03) 다만,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04) 또한, 회사는 인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본 정책은 수정되거나 개선될 수 있으며,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전달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04. 인권경영 일반원칙

01) 차별 금지

- (1) 회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여부,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승진,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 (2) 회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며,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02) 인도적 대우

- (1) 회사는 전 사업장의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한다. 또한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한다.
 - 회사는 HS효성과 자회사, 계열사 등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정책을 준수한다.
 -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되며, 회사는 임직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모든 임직원의 급여를 각 국가별 생활임금과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 (3) 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03) 근로조건 준수

- (1)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04) 직장내 괴롭힘 금지

- (1) 회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2) 회사는 사업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 주는 행위인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다.

(3) 회사는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5) 결사의 자유

(1) 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06) 인재 육성 및 경력 개발

(1) 회사는 직무 역량에 기반한 전문성과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임직원이 글로벌 시장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하여 취업 보호 대상자를 우대한다.

- 회사는 필요 시 다른 회사, 교육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성에 기초한 인재 풀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규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적절한 교육 제공을 통해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공정하며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포용성에 기반해 차이를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원들이 혁신 실현, 안전하고 포용성 있는 문화 조성, 개인의 성장 및 전문 역량 개발, 비즈니스 효과 창출에 함께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티 (Employee Resource Group)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한다.

07)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회사는 공급업체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업체가 인신매매, 아동노동 또는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며, 평가 및 실사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 종료 등을 적극 검토한다.

(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을 준수하며,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

(3) 회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법령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회사는 아동노동 금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아동 노동이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급망 내에서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나) 아동은 만 15세 미만인 자 혹은 의무교육 이수 중인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며,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 법률이 정한 연소자의 근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때 해외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국가의 아동 및 연소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본 정책과 현지 법률이 정한 보호 조치가 상충될 경우, 연소자의 권익 보호에 더 유리한 쪽을 따른다.

08) 산업안전보장

(1) 회사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 정책을 결정한다.

(2) 회사는 모든 작업자가 당사의 ‘환경경영정책’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예방조치, 안전수칙에 따른 작업 수행, 개인 보호장비 제공, 정기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09) 정보 보호

(1)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임직원의 동의 하에 수집한다.

(2)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10) 지역사회 인권보호

(1) 회사는 사업장 지역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2) 회사는 지역주민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소유권 이전 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1) 환경권 보장

(1) 회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등 환경 문제가 근로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환경경영 목표 및 정책 등을 수립한다.

12) 소비자 인권보호

(1) 회사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경영 활동으로 인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한다.

13) 공급망 관리

(1) 회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급망에서도 본 정책을 준수 및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05. 인권경영 거버넌스

회사는 임직원 및 협력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회사의 인권경영 최고 의사결정 및 감독 기관으로 이사회 산하의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는 전사 인권경영의 목표, 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전사 인권경영 실행 총괄 책임자로서 지원본부장을 지정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 인권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활동을 총괄 관리 감독한다.

또한, 본사 인사 담당 부서장, 감사 팀장, 국내외 사업장 및 해외법인 관리 부서장 등 핵심 부서장들은 실무 협의의 체계를 구성하여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경영 정책 제,개정 심의, 국내외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정립, 인권 이슈별 대응 조치 수립 및 이행 여부 관리 감독을 포함한 그 밖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주요 활동 계획 및 결과를 ESG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안건은 이사회에 별도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는 ESG경영위원회 및 경영회의가 상정한 인권경영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06. 인권경영 주관부서

01) 회사는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를 정하여 운영한다.

02) 주관부서는 아래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07. 인권교육

01)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최소 연 1 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02) 인권 교육은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임직원들 대상으로 별도의 인권 감수성 교육, 기업과 인권 이론 및 실무교육, 직무 연관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03) 주관부서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ESG경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당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08. 인권영향평가

- 01) 주관부서는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기 위해 연 1 회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 02)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1) 회사는 매년 인권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 문항을 검토 및 개선하고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 (2)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실제적,잠재적 리스크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필요 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 (3)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즉시개선이나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 및 모니터링한다.
- 03) 매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계획과 평가 수행 결과를 ESG경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당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09. 인권침해 구제 절차

01)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방침

- (1)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후적 구제 및 분쟁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인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두고 내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기본적으로 임직원은 인사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HR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사는 구매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협력사 ESG 평가를 통해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채널 외 회사 홈페이지의 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인권침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 (3) 누구든지 인권침해 행위 여부의 판단, 구제절차에 대한 문의 등을 위하여 주관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02)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방침

- (1) 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한 자의 인권침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인권침해 구제 절차에는 신고의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고충이 제기되면 회사는 접수 사실을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가) HR상담센터 : HUB 메인 홈페이지 내 HS 상담센터 활용
 - (나) 온라인 제보센터 : [HS효성 제보센터](#)
 - (다) 다른 방법의 제보하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 전화번호 : 02-707-6114
 - FAX : 02-707-7663

(주)HS효성 지원본부 인사총무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안전보건 정책

(주)HS효성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직원과 협력업체,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 이행함으로써 무재해, 근로 환경 개선을 달성하고, 안전, 보건 활동 프로세스 및 이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2.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법규, 규정 및 협약을 엄격히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3. 유해화학물 취급 상태, 작업장 소음 및 진동 등 안전,보건 요소들을 수시로 점검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한다.
4. 안전,보건경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총체적인 신뢰성을 높인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정책

(주)HS효성(이하 ‘회사’)는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한 제품 제안을 통해 모든 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본 정책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01. 공급망 관리 강화

회사는 공급망 내 사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공급망 내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사 선정 및 정기적인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 사회 및 환경, 윤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며, 공급망 전반에 협력업체 행동 지침과 일관되는 정책,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02. 친환경 구매 강화

회사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고, 자원 절약에 기여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구매를 통해 회사 제품의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또한, 품질과 가격 이외에 제품의 친환경성을 검토하고, 친환경 제품을 우대합니다.

03. 공급망 내 기후변화 대응 관리 강화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협력업체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수립 된 목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또한,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효과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합니다.

04. 공급망 내 인권,노동

공급망 내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육체적,심리적 억압, 고문, 차별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학대, 전쟁범죄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반인류적 범죄, 대량학살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05. 공급망의 책임 있는 광물 사용 준수

회사는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비인도적 이슈가 심각한 분쟁지역의 광물을 구매하지 않고,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실천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합니다. ‘협력업체 행동지침’을 통해 책임있는 광물 사용 준수 서약을 요구하고,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Supply Chain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를 토대로 공급망 내 책임 광물 관리를 실시합니다.

06. 공급망 역량 강화 지원

회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의 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ESG 역량을 강화하여 상생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매년 중점 관리가 필요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급망 내 ESG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컨설팅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07. 고충 처리

회사는 원료 조달부터 판매 전 과정 밸류체인 내 공급망 관련 고충사항 발생 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제보자는 제보자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리스크 발생 시 경영회의체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1) 온라인 제보센터 : [HS효성 제보센터](#)

(2) 다른 방법의 제보하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 전화번호 : 02-707-6114
- FAX : 02-707-7663

별첨. (주)HS효성 ESG 리스크 관리 가이드 라인

(주)HS효성 (이하 '회사')는 공급망 내의 잠재된 사회, 환경, 거버넌스(E,S,G)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합니다.

1.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체계

회사는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표준 및 회사의 협력업체 행동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지표'를 통해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신규 협력업체 선정 시 사전 평가 및 연 1회 ESG 리스크 진단을 통해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협력업체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정책' 및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반하거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거래 중지 등 (주)HS효성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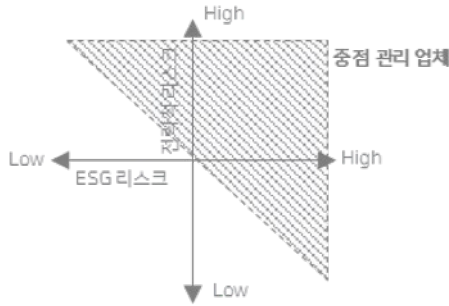
2. 신규 공급 업체 등록 단계

회사는 신규 협력업체 등록 시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행동지침 준수를 서약 받고, ESG 준수사항이 포함된 회사의 표준 계약서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 1) 외부 ESG 평가기관(EcoVadis, MSCI, KCGS 등)의 평가 결과 제출 또는 회사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지표'에 의한 사전 ESG 리스크 진단을 실시합니다. 필요 시, 회사의 전담 조직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사전평가와 현장 점검 결과 ESG 관련 리스크가 식별될 경우, 시정조치 기한을 주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한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신규 협력사 등록이 불가합니다.
- 2) (주)HS효성의 '협력업체 행동지침' 준수 서약을 요구하고, ESG 준수사항이 포함된 회사의 표준 계약서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 3) 신규 등록하는 협력업체는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LCA(Life Cycle Assessment)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정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 1) 사전평가 및 현장 실사 대상 선정
회사는 연 1회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을 통해 협력업체의 행동 지침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식별, 관리합니다.
 - (1) 평가 대상
- 구매 금액, 자재별 구매 비중 및 Sole Vender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 공급업체
 - (2) 현장 실사 대상 업체 선정
- 현장 실사 대상 업체인 '고위험 업체'선정을 위해 주요 공급업체 대상으로 Screening 과 온라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 미만인 업체를 '고위험 업체'로 선정합니다.



중점 관리 업체 선정 기준

- Screening

구매 금액과 구매 의존도 등 전략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가 위치한 지역, 작업 환경 및 전년도 평판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온라인 평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영역별 ESG 리스크 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공급업체 온라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ESG 리스크 평가 지표]

영역	평가 지표
기후변화대응	배출량 관리 여부, 감축 목표 및 감축 계획 수립 여부 등
친환경 경영	제품 환경성, 에너지 관리, 친환경 투자 등
오염방지,폐기물	폐기물 관리 절차, 대기,수질 및 토양, 소음, 약취 관리 절차 등
인권,노동	인권,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다양성, 노동조합 운영 등
안전보건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 산업재해율 관리 여부 등
공급망 관리	공급망 ESG관리, 분쟁광물, 친환경 구매 관리 시스템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 체계, 지역사회 소통 프로세스 등
기업행동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윤리경영, 정보보안 체계 등
공정거래	공정거래, 반부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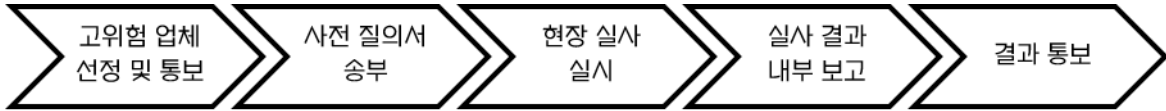
2) 현장실사

(1) 현장 실사 대상

- Screening과 온라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고위험 공급업체’ 및 전년도 현장 실사 결과 High Level의 리스크가 식별 된 업체

(2) 현장 실사 프로세스

- 회사는 현장 실사 대상 업체에게 현장 실사 관련 안내 및 사전 질의서를 송부합니다. ESG 리스크 현장 실사팀은 협력업체의 법규 위반 여부, 국제 사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ESG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현장 실사 프로세스

3) 사후 관리

현장 실사를 통해 식별된 ESG 리스크는 위험도(발생 빈도×영향도)에 따라 High , Medium , Low 단계로 구분하고, 평가 결과를 해당 업체에 안내합니다. 평가 결과 안내 후, 1개월 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효성첨단소재에 제출하고, 리스크 단계별로 3개월(High), 6개월(Medium), 9개월(Low) 이내 조치 완료를 요구합니다.

4) 이행 결과 점검

현장 실사를 수감 받은 공급 업체는 회사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은 조치 결과 및 효과성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회사는 현장실사 결과 High Level의 리스크가 식별된 현장 업체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정기 ESG 리스크 진단 시, 현장 실사를 통해 개선 계획의 조치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조치가 미흡한 공급업체는 효성첨단소재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거래 중단 또는 종료 사유의 해소를 위해 공급업체에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미 발주 된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ESG 리스크 관리가 잘 이뤄진 공급업체는 우수협력사로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협력업체 행동지침

(주)HS효성(이하 'HS효성'라 함)은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기업 가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회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협력회사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HS효성 협력업체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지침을 통해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 및 하위 협력사에 윤리적 기업 운영,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 존중,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그리고 환경경영에 대한 책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본 지침은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 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 가이드 라인 등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지침과 현지 법규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윤리 및 공정거래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적극적인 윤리경영 동참을 요청합니다.

- 1) 반부패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선물, 편의 등의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당한 요구 금지
- 2) 공정거래와 경쟁 : 입찰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경쟁에 관한 규제와 기준을 준수하며, 불공정 행위 시 거래 중단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 3) 고객만족 :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
- 4) 이해관계 상충 : 개인과 비즈니스 간 이해 상충 관련 또는 초래될 수 있는 계약 사전 방지
- 5) 지적재산권 보호 : 협력회사는 HS효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위 협력회사의 모든 정보를 보호
- 6) 개인정보 보호 : 협력회사, 임직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개인정보를 보호
- 7) 제보 익명성과 보복금지 :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 비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보복의 두려움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
- 8) 분쟁광물 금지 :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모든 원자재 및 원료 사용 금지

인권 및 노동 :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수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1) 차별금지 : 인종, 언어, 종교, 민족, 장애, 정치, 학연 및 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 2) 강제노동 금지 : 협력회사는 직, 간접적인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하위 공급업체들을 공급망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
- 3) 아동노동 금지 : 협력회사는 어떠한 제조 과정에서도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아동노동을 통한 이익을 얻는 하위 공급업체들을 공급망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

-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비인도적 행위 금지
- 5) 공정한 보상 : 공정한 근로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제공
- 6) 노동환경 개선 : 현지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포함한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정기적 유급휴가를 제공
- 7)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 보장
- 8) 재산권 보호 : 협력회사는 HS효성과 2 차 협력회사의 모든 지적, 물적재산권을 존중
- 9) 사생활 보호 : 직원 개인의 정보와 가족, 주택, 통신 등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간섭 금지

안전 및 보건 : 사업장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근로자의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합니다.

- 1) 근무환경 개선 :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2) 비상사태 대비 : 비상사태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대피훈련을 통한 효과적 대피능력 제고
- 3) 산업재해 예방 :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력
- 4) 위생 관리 : 근로자가 사용하는 화장실, 식수, 기숙사는 위생적으로 관리
- 5) 안전보건 교육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제공
- 6) 유해인자 노출 방지 :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고 통제
- 7) 설비 안전 관리 : 위험설비의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
- 8) 안전 사고 관리 :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환경 : 제공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고,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1) 환경법규 준수 : 법정 필수 인허가 취득은 물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준수
- 2) 환경영향 저감 : 공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3)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관리 :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거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과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 4) 대기오염 관리 :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방지시설 모니터링
- 5) 물 관리 :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준치 내 배출 모니터링
- 6)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감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검증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립, 이행
- 7) 제품 전과정 평가 관리 :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과정인 원료 채취 단계, 가공, 조립(생산), 수송, 사용, 폐기의 모든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 및 수계, 토양으로의 환경 부하량을 정량화하고 제공.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규명, 환경 부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8) 폐기물 관리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

9) 생물다양성 및 산림 보호 : 가치사슬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다양성 및 산림파괴 리스크를 예방 및 완화

경영 시스템 : 협력업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해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합니다.

- 1) 운영 체계 구축 : 행동규범 준수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선정
- 2) 리스크 관리 : 사업 운영 중 발생가능한 윤리 및 공정거래, 인권 및 노동, 안전 및 보건, 환경 분야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이행
- 3) 교육 및 소통 :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 및 관련 법령과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 이행,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성과를 임직원에게 공유
- 4) 규범 준수 :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 제 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 방문 시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 제공
- 5) 고충처리 제도 운영 : 윤리 및 공정거래, 인권 및 노동, 안전 및 보건, 환경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및 인지하거나,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 운영

본 지침은 정기적으로 개정 될 수 있으며, 개정 된 사항은 HS효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또한 HS효성 또는 HS효성의 제 3자 평가 기관은 본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 및 현장 방문 및 실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지침에 대한 중대 위반 사항이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HS효성과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분쟁, 책임광물 정책

01. 목적

본 문서는 (주)HS호성 (이하 '회사')가 분쟁,책임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협력사의 동참 독려를 통해 해결 및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용어의 정의

01) 분쟁광물

- 아프리카 10개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말한다.

02) 책임광물

-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로, 분쟁광물 3TG와 외에도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운모 등을 포함한다.

03)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광물 이니셔티브)에서 주관하는 분쟁,책임광물 미사용 제련소에 대한 실사 및 보증 프로그램을 말한다.

04)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 조

- 금융체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 중 분쟁광물과 관련된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콩고산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자신이 이용한 광물이 콩고 분쟁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05) OECD 실사지침서

-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기업운영,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근로자, 인권, 환경, 뇌물수수, 소비자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발생할 여러 부정적 영향들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

03. 적용범위

01) 본 규정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0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분쟁,책임광물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03) 다만,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04. 이념

회사는 분쟁, 책임광물 채굴로 인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한다.

05. 방침

판매 자금이 전쟁에 투입되거나, 채굴 시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인권 및 환경 관련 문제가 분쟁광물로 인해 야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 조’와 OECD의 ‘실사 지침서(Due Diligence Guidance)’를 기반으로, 인권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이 의무화 되었다. 회사는 이에 따라 분쟁, 책임광물과 관련한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01) 회사는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의 광물만 취급한다.
- 02) 회사는 협력사가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정기교육 및 분쟁, 책임 광물 관리 가이드 제공을 통해 지원한다.
- 03) 회사는 질의서, 서면 등을 통해 협력사가 분쟁, 책임광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04) 회사는 협력사의 공급망에서 분쟁, 책임광물 리스크를 도출할 시,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다.
- 05) 회사는 분쟁, 책임광물 리스크 조사 및 개선 조치에 비협조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06. 관리 체계

01) 거버넌스

회사는 최고이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이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관리한다. 회의체의 주요 역할은 분쟁, 책임광물 정책 제, 개정 논의, 분쟁, 책임광물 관련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심의, 그 외 분쟁, 책임광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한 논의입니다. 회사의 이사회 또는 산하 ESG경영위원회는 사업운영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쟁, 책임광물 관련 규제 대응, 협력사의 분쟁, 책임광물 리스크 관리 등을 검토, 심의합니다. 회사는 분쟁, 책임광물 정책에 근거하여 이행하는 실무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실무조직은 분쟁, 책임광물 리스크 이행 체계 운영, 협력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활동 이행, 분쟁, 책임광물 관련 교육 및 확산,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등입니다.

02) 교육 및 확산

(1) 회사는 자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쟁, 책임 광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2) 분쟁, 책임광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계나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03) 고충처리

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책임광물 관리 관련 고충사항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한 사례를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제보자는 제보자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제보센터 : [HS효성 제보센터](#)

(2) 다른 방법의 제보하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 전화번호 : 02-707-6114
- FAX : 02-707-7663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01. 참여 활동의 방향

(주)HS효성(이하 ‘회사’)은 ‘과학, 기술, 집단지성의 힘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으로 정의하며, 이를 기업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회사는 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가치, 요구사항, 관심사를 면밀히 확인,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 반영한다. 이를 통해 최고, 혁신, 책임, 신뢰, 존중, 협력, 긍지, 열정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한다.

02. 원칙 적용 범위

본 원칙은 회사의 전사적 경영활동과 해외 법인, 자회사, 계열사에 적용한다. 모든 임직원은 자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는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 소통과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전사 차원의 이해관계자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참여의 수준과 방법은 별도의 실행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한다.

03. 원칙 준수의 목적

회사는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1) 경영의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강화
- (2) 주주 가치 극대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 (3) 임직원 행복과 긍지 증진
- (4)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사회 가치 강화
- (5)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체계 확립
- (6) 고객 가치 극대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의 장기적 가치 창출과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04.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본 원칙

- (1) 포용성 : 중요한 이슈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 (2) 중대성 : 중대성평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영향도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 (3) 대응성 : 중요이슈에 대한 대응과 결과를 투명하게 소통한다.
- (4) 협력성 :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신뢰와 장기적관계를 구축한다.

05. 이해관계자 식별 프로세스

- (1)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 (2) 이해관계자를 기능, 중요도, 영향도, 기업활동 연관성에 따라 구분한다.
- (3) 구분된 이해관계자는 영향력, 영향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해관계자 맵 (Stakeholder Map)을 작성한다.
 - (가) 연 1회 재검토를 권장하며, 각 사업장은 특수성에 따라 중요 이해관계자를 별도 선정할 수 있다.
 - (나) 미래세대와 환경도 이해관계자로 고려한다.
- (4) 이해관계자 매트릭스(Stakeholder Matrix)는 정부,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투자자, 학계, 전문가 등 주요 집단을 포함하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 관리 도구로 활용된다.
 - (가) 고객 : 제품 구매 고객, 잠재 고객
 - (나) 임직원 : 국내외 (주)HS호성 임직원 전체
 - (다) 협력사 : 물자 협력사, 기타 서비스 협력사 등
 - (라) 지역사회 : 지역 주민, 사회복지기관, NGO, 국제기구 등
 - (마) 주주 투자자 : 개인 및 단체 투자자, 투자 및 금융 기관, 애널리스트 등
 - (바) 정부, 유관기관 : 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역 관공서, 규제와 기관 관련 정책, 담당 부처, 언론사 등
 - (사) 학계 전문가 : 대학 관련학과 교수진, 연구단체, 학회, 협회 등

06.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방향

회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활동을 사업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 (1) 의견 조정: 회사의 관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의제와 우선순위를 설정
- (2) 협의: 모든 측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 도출
- (3) 협력: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구축
- (4) 혁신적 파트너십 장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 관계 강화
- (5) 열린 커뮤니케이션: 숨김없이 투명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 (6) 실질적 대응: 도전적 이슈에도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며 합의 달성을 위해 노력

07. 소통채널 및 대응체계

회사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독려하고 대응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합니다.

- (1) 활용채널: 사회적 네트워크, 미디어, 이메일, 정기 간담회 등
- (2) 운영방식: 실질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운영, KPI 기반 성과 점검
- (3) 책임주체: 각 부문 담당은 대응 활동을 분석 및 수립하여 전사에 공유

08. 정보 제공

참여자에게는 사전,사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참여의 신뢰성과 성과를 높인다.

- (1) 중요이슈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 제공
- (2) 이슈관리 및 대응방안 설명
- (3) 참여성과와 후속조치 결과 공유

09. 커뮤니케이션 기본 수칙

- (1) 모든 참여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 (2) 합의된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고, 익명 의견도 존중한다.
- (3) 이해관계자 분석과 참여절차의 주요목적은 관계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 (4) 불신, 위협,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 저조한 참여는 지양한다.

10. 공시 및 투명성

회사는 이해관계자 참여활동과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식 웹사이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이는 회사의 비전, 핵심가치와 가치경영 원칙(주주 가치 극대화, 고객 가치 증대, 임직원 행복, 사회적 책임,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구체적 활동입니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HS효성 윤리강령

우리 HS효성은 ‘과학과 기술 및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여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과 ‘가치 또 같이’의 슬로건 아래,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HS효성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HS효성그룹의 행동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법규 및 규정 준수: 회사와 임직원은 법규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01) 국가 정책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을 준수합니다.
- 02) 국내뿐 아니라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시장경제 질서와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합니다.
- 03) 회사의 경영방침과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 04) 조직 내에서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를 하거나 응하지 않습니다.
- 05) 업무 관련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06)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 지급 및 수취 시 국가 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회사 지침에 따릅니다.
- 07) 회사 업무로 인해 취득한 회사와 고객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08) 임직원은 자신과 회사 간 또는 자신과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발생할 경우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 09)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및 자금 세탁을 자행하거나 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고객 가치 극대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높입니다.

- 01)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 02)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품질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3) 고객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건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win-win)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3. 주주 및 투자자 가치 극대화 :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합니다.

- 01)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합니다.
- 02) 주주 및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합니다.

03)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이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4. 상생 협력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협력사와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01) 협력사 선정과 거래에 있어 인권, 환경,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고려합니다.

02)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03)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5. 사회적 가치 강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01)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02)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03) 지속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해, 구매 활동 시 협력사 및 제품공급의 지속가능성과 제품 생산과정의 정당함을 구매 기준에 반영합니다.

6. HS효성 가족 행복 추구: 비전을 공유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HS효성 가족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01)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킵니다.

02)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HS호성 윤리강령 실천지침

1. 법규 및 규정 준수

01) 국가정책 및 법규 준수

- (1) 국가 정책을 존중하고 불법 및 위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2) 영업활동에 있어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4)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사회질서 등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 (5)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경제 질서, 거래 관습 및 법령을 존중, 준수하여 사업 상대방과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부패, 사기, 뇌물, 자금세탁의 방지 등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 (7)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횡령, 공금유용, 기물 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02) 회사 규정 준수 및 회사에 대한 기본 윤리

- (1)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 핵심가치, 경영목표를 상시 공유하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제반 사규를 준수하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합니다.
- (2) 업무수행 시 개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 (3)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 및 타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어떠한 특수관계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 (4)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중요한 정보는 인지한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03) 윤리경영 준수

- (1)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률,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부하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04)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업무 관련 대가성 금품이나, 뇌물, 향응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2)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발생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3) 임직원은 업무로 인해 취득한 회사 등 고객의 정보를 관련 법규 및 사내 보안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고객 가치 극대화

01) 고객과의 거래

- (1) 고객 만족 및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고객과 맺은 약속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 (2) 고객과의 거래 시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3) 고객으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대가도 받지 않으며,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4) 허위, 과대 광고 및 표시, 정보 은폐 등을 하지 않으며,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5)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원재료, 부품 및 포장재 구입의 조달단계에서부터 제품의 개발, 제조, 물류,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고객 안전을 고려한 제품 전과정 책임주의를 실천합니다.

3. 주주 가치 극대화

01)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 (1)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2) 회계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며,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합니다.
- (3)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증권거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02) 주주의 알 권리 보호

- (1) 주주 및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성실히 제공합니다.

(2) 적극적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합니다.

4. 상생 협력 강화

01) 공동의 성장 추구

- (1) 협력사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상호간의 이익 증대와 공동 발전을 추구합니다.
- (2) 우수 협력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 (3) 협력사를 정하고 거래를 개시 및 계속함에 있어 회사가 추구하는 인권, 환경,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합니다.
- (4) 협력사와 지속 가능한 거래가 되도록 발전 및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5) 공급망 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협력사 선정 및 평가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여부를 고려합니다.

02)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 (1)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2) 입찰이나 계약 등 협력사와 거래 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수행합니다.
- (3)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력사의 모든 정보를 보호합니다.

5. 사회적 가치 강화

01) 사회 발전 기여

- (1) 사업 및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공동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 (2)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공헌활동 등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지원합니다.
- (3)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02) 함께하는 사회책임 경영

- (1) 녹색 구매 방침에 의거하여 친환경 구매를 적극 장려합니다.
- (2) 분쟁광물 등 생산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치적 분쟁 등 문제가 있는 원,부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협력사의 구매 과정에도 반영,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HS효성 가족 행복 추구

01) 임직원 존중

- (1) 임직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2)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 (3) 고용, 업무, 승진, 임금, 복리후생, 기타 처우 등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 임직원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02)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1) 임직원 상호간에 도박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금품 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2)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성적, 시각적 행동이나 비방, 음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3) 회사와 임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 주도적,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주)HS효성 ESG경영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부패 방지 정책

(주)HS효성 (이하 ‘회사’)는 고객사, 협력사, 경쟁사 및 정부 기관을 대할 때 정직, 신뢰성, 투명성을 우선으로 한다. 회사의 정책은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OECD 뇌물방지협약 등 전 세계의 부패 방지 법률 및 규정(이하 총칭하여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1. 목적 및 기본원칙

01) 본 부패방지정책(이하 ‘본 정책’)을 통해 회사는 회사 임직원에게 뇌물 수수 또는 제공 금지 및 부패 방지 의무를 알리고,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02) 회사는 모든 종류의 부패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뇌물을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그러한 수수 또는 제공을 약속, 제안하는 행위는 본 정책에 의해 금지된다.

03)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 및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회사 임직원 본인이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또는 다른 임직원이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강령 또는 내부 고발 정책을 따라야 한다.

02. 용어의 정의

01) 뇌물

-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 접대, 서비스, 선물, 편의 제공 등의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1) 수령인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생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2)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령인이 속한 조직 또는 단체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행위
- (3)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 승인, 계약, 기타 혜택 등을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한 행위

02) 부패

- 공정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권한을 오용,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03) 선물 및 접대

- 특정한 사업 및 영업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 숙박, 교통비 및 향응 등 금전적,비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항목을 의미한다.

04) 급행료

- 공무원 등으로부터 통관, 비자, 사업 허가, 사업 면허 취득 등 일상적인 조치를 확보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뜻한다. 정부기관이 정한 수수료 등을 합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05) 정부기관

- 국가, 주 또는 지방 정부(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와 이들이 소유하거나 출연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는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 연구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공립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한다),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권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 본다.

06) 공무원

- 정부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정부기관을 위하여 공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 공공 국제기구의 종사자 또는 대리인, 선출자, 공직 후보자, 정당의 임원, 직원, 대표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03. 적용범위

0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계열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법인 및 단체와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02)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이하 ‘협력사’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03)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소재지(또는 행위지)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04. 부패 금지

01) 회사 임직원이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한 모든 회사의 거래에서 뇌물을 포함한 부패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02) 회사 임직원은 부정한 이익의 확보 또는 부당한 영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다음의 단체 및 해당 단체 소속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 선물 및 접대, 급행료 또는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 제안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 (1) 정부기관(정부 소유 또는 출연 단체, 정부 운영 단체 포함)
- (2) 공공 국제 기구(예: 유엔 또는 세계 은행)
- (3) 정당 및 공직 후보자
- (4) 비정부 단체(NGO)
- (5) 민간 기업

03) 뇌물 또는 부패 행위를 통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로 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뇌물을 제안하거나 약속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실제로 회사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정책 위반으로 간주한다.

04) 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사업 및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의 협력사 등으로부터 뇌물, 선물 및 접대,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05) 뇌물을 포함한 부패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회사 임직원의 책무이다.

05. 선물 및 접대 금지

01) 회사는 선물 및 접대가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감사의 표시로써 그 내역이 기록되고 회사의 윤리 강령과 본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02) 그 외의 경우에 선물 및 접대를 주고받지 않기 위하여 회사 임직원은 선물 및 접대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선물 및 접대에 비례하는 가치를 주고받을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령인 또는 제공인으로 하여금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선물 및 접대를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03) 선물 및 접대가 입찰, 협상, 제안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선물 및 접대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회사 주주, 소비자 등으로부터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선물 및 접대를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

04) 회사 임직원은 선물 및 접대가 수령인 또는 제공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현지 법률 또는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5) 회사 임직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선물 및 접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직속 상사 또는 다른 상위 임직원과 상의해야 한다.

06. 급행료 금지

급행료는 일반적으로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며, 급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07. 정치, 지역사회 및 자선 기부

01)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정치적 기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이 허용하는 정치적 기부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임직원은 정치적 기부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치적 기부를 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0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프로젝트, 국내외 자선 단체 및 기타 수혜자에 대한 기부를 허용한다. 단, 외국을 기반으로 한 자선 단체 및 기타 수혜자에 대한 기부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 임직원은 회사를 대신하여 자선 기부를 하기 전에 회사의 자선 기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

08. 제 3 자를 통한 부패 방지

01) 본 정책은 뇌물, 선물 및 접대, 급행료 또는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제 3 자 또는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회사 임직원은 제 3 자나 중개자가 다음을 포함한 잠재적 위반 징후를 보일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 (1) 제 3 자 또는 중개자의 소재 국가가 뇌물 수수로 알려져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뇌물 수수에 대한 정기적인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
- (2) 제 3 자 또는 중개자의 평판 및 관계
- (3)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커미션, 보너스, 리베이트 등
- (4) 제 3 국 은행 계좌에 대한 지불 요청, 비정상적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은행 계좌 등
- (5) 비용 또는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문서의 부재
- (6) 기타 유사한 의심스러운 행위

02) 회사가 중개인으로 하여금 뇌물, 선물 및 접대, 급행료 또는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패 행위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각 국의 부패방지법령에 따라 임직원 개인과 회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09. 회계 및 기록 보관

회사 임직원은 각 거래 또는 금전 지불을 회사의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회사 장부 및 기록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부패방지법령과 회사의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10. 교육 및 자문

- 01) 본 정책을 기반으로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 등 관련 윤리 규범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면,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준법 교육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히 이를 반영하고, 임직원에게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준법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02) 회사는 임직원이 본 정책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법무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에 자문한다.

11. 보고 및 지원

- 01) 공무원 등 및 고객, 협력사 등의 관련자가 회사 임직원에게 접근하여 직간접적으로 의심스러운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직속 상사 또는 상위 임직원 또는 감사 부서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상위 직책에 있는 사람은 차례로 그러한 상황을 회사의 법률 고문 또는 최고 준법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사 임직원은 회사 내부 고발 지침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 02) 업무 수행 중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에 관련한 회사의 조사를 거부한 임직원은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03) 신고자의 신상은 엄격하게 비밀보장 되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제보센터 : [HS효성 제보센터](#)

(2) 다른 방법의 제보하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 전화번호 : 02-707-6114
- FAX : 02-707-7663

(주)HS효성 준법지원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사회공헌 활동 정책

01. 사회공헌활동 정의 및 목적

01) 정의

(주)HS효성(이하 ‘HS효성’)은 ‘가치, 또 같이’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공헌을 추진합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및 정보들을 취합하여 경영 의사결정 시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하기 위한 기준이다. HS효성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지역사회 니즈에 따른 도움 제공
 - 지역사회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유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 대응 방안
 -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활동 확대
 - 사업 제품을 활용한 활동 발굴
- (연결 문서.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02) 목적

HS효성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와 상생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한 의사 결정 강화
-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지원
- 지역사회 중대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참여

02. 사회공헌활동 참여 원칙

HS효성의 사회공헌 활동은 취약계층 역량 강화, 자립 지원(Guiding Star), 문화예술, 호국 보훈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Giving Tree),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발전 프로그램(Shared Planet) 세 가지 실행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관련 의사결정은 다음 5개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적절성 : 참여 활동이 3가지 전략적 방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결정 시 올바른 정보, 도구, 참여 방법 및 기타 관련 세부 정보를 활용한다.
- 적시성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줄 수 있는 올바른 시기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한다.
- 투명성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관련 의사결정과 전략적 계획 수립에 기회를 확보한다.

- 효과성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고려한다.
- 포괄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활동 및 이슈에 대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03. 사회공헌활동 가이드라인

HS효성은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 주요 리스크 및 기회를 함께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련 활동을 관리 및 운영한다.

01) 정보교환

- 지역사회 문제와 대안 또는 해결책을 교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02) 의견수집

- 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및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실시한다.

03) 참여활동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이슈와 관련 된 의견을 직,간접으로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활동 실시한다 (예: 현장 방문, 조사, 미팅 참여 등)

04) 협업

- 실행 방안 및 R&R 수립 등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업 추진한다.

05) 의사결정

- 위 명시된 가이드라인 세부사항을 모두 반영해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04. 주요 사회공헌활동 중기 목표(2030년 기준)

HS효성의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목표 달성 여부는 이사회 연 1회 보고한다. 논의가 필요한 세부 활동 내역은 위원회에서 리뷰하고 특별 이슈가 있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목표를 재조정한다.

정성적 중기 목표

01) Guiding Star: 희망을 주는 길잡이 별

-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위한 장학제도 안정적 유지하고 지원 대상자 확대

02)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문화예술 후원 규모를 점진적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

03) Shared Planet : 같이 키우는 가치

- 공원 입양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사업장별 연 1개 이상 수행

전략물자 수출제한 정책

01. 목적

본 정책은 (주)HS호성 (이하 '회사')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전략물자 자출 수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용어의 정의

01) 수출

-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의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으로부터 외국인 (외국법인 포함)에게로의 이전을 말한다.

02) 전략물자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물품 등을 말한다.

03) 대량 파괴 무기 등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등을 말한다.

04) 전략물자 등

- 전략물자 또는 대량 파괴 무기 등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 상화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05) 대외무역법

-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및 관련 규정을 말한다.

03. 적용범위

0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체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02) 임직원은 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03)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소재지(또는 행위지)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04. 이념

회사는 신인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있어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리의 중요성을 상시 유념한다.

05. 방침

- 01)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 02) 정부의 수출통제체제 및 전략물자 등 수출 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 등 대외 무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주)HS효성 준법지원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조세 정책

(주)HS효성 (이하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납세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법 준수와 세무 리스크 관리가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고객 및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01. 세법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국의 세법과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며,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각국 세법 준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 시 외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국의 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의사 결정하여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02. 거래 투명성 보장

회사는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관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각국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세무감사, 조사 등 세무 관련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03. 국제 거래상 의무 이행

회사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등의 상업적으로 실질이 없는 거래나 과세 구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가간 세법의 차이나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국가간 소득 이전이나 조세 회피 거래를 하지 않으며, 각 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출된 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4. 정상 가격 원칙 준수

회사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가격은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기반한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준수하는 사업 및 투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외부 세무전문가와 협력하여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HS효성 회계팀
0차 2025년 10월 31일 신규 제정

POLICY BOOK

(주)HS효성그룹 ESG경영정책집

최초 발행일 : 2025년 10월 31일

개정 차수 및 개정일 : 신규 제정

발행처 : (주)HS효성 ESG경영팀

본 문서는 (주)HS효성그룹의 ESG경영 정책집으로 (주)HS효성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HS효성 ESG경영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02-707-7233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04144)
- HS효성 ESG경영팀 이메일 및 HS효성 홈페이지